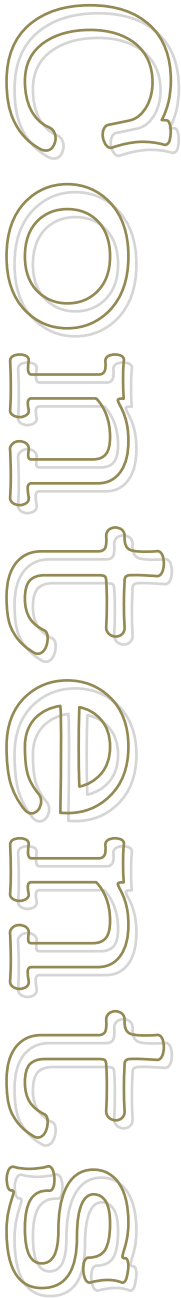




113th February 2018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WHERE IS GRACE CHANG?

씨 뿌리는 사람

COVER STORY

미국의 Liquidation 과의 비교를 통해 보는 수입세액 정산제도

FTA NEWS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 4 라운드 협상 발효 임박에 따른 각 기업의 APTA 활용 방안

VOICES FROM THE FIELDS

위기의 전안법 이대로 관창은가 신한관세법인, 전안법 개정안에 힘 실어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일부 개정 외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판례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 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ABOUT WRITERS

씨 뿌리는 사람



장승희
 대표 관세사

“사람 키우듯 곡식을 키운다.”

뭐든지 정성을 들이고 풀 한포기 함부로 뽑아 버리지 않으시는 82세의 박부레 할머니는 평생 기계를 쓰지 않고 호미와 괭이로만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께 씨앗은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알 한알 정성으로 심어서 가꾸어 가는 것이지요. 귀한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 새의 먹이로 없어지거나, 바위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고운 흙, 비옥한 땅에 심겨져야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오며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한알의 작은 씨앗 안에는 많은 미래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씨앗이 있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커다란 나무의 씨앗이 있습니다. 맛있는 열매를 만들어 내는 씨앗이 있고, 자라서 땀싸리 빗자루가 되어주는 씨앗 등 다양한 삶의 시작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달 Cover Story 는 ‘미국의 Liquidation 과의 비교를 통해 보는 수입세액정산제도’입니다. FTA News 는 ‘아시아 · 태평양 무역협정 (APTA) 제 4 라운드 협상발효 임박에 따른 각 기업의 APTA 활용방안’이며, Voices From the Fields 는 ‘위기의 전안법 이대로 괜찮은가? 신한관세법인, 전안법 개정안에 힘 실어’입니다. 또한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소식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대한 내용 등이며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판례에서는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본사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례의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낳아준 부모와 떨어져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장래의 꿈을 물어보면 70~80%의 아이들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사회복지사로부터 받은 도움에 감명을 받아, 본인들도 자라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구나.” 라고 추측하며 감격했습니다. 참으로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동일한 꿈은 **그러한 미래만이 그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 밭에 떨어진 씨앗이 몇 가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한 고아원에 매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어른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이야기하였다 합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 및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교수님들까지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세계와 다양한 삶에 대해 이야기해주었고, 보여주었고 또 맛있는 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 번의 강의와 수개월의 시간이 흐르자 시큰둥하고 관심없어 하던 아이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감싸고 있는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지요. 조금씩 조금씩.

산골의 할머니는 무얼 심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미리 생각하시며 씨앗을 뿌리십니다. 붉은색 진흙이 섞인 질 땅에서 잘 자라는 마늘이 있고, 모래밭에서 잘 자라는 달래와 땅콩 등이 있습니다. 뭐든지 정성을 들이고 풀 한 포기 그냥 함부로 뽑아버리지 않으십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에게는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양분과 적당한 시간이 필요** 합니다. 아직 잎은 없지만 땅 속에서 순을 내려고 준비하는 산야초에게도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양분과 적당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안보이지만 딱딱한 껍질 안에서는 새순이 만들어지고, 뿌리를 내리는 준비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텅 비어있던 아이들의 마음 밭에 많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다양한 꿈을 지닌 씨앗들이 심겨졌습니다. 황량하고 스산하던 아이들의 마음 밭에서는 많은 싹이 나올 것입니다. 그 작은 싹들이 자라서 세상의 기술을 이끌어갈 기술자들이 나올 것이고, 아름다움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나올 것이고, 사회와 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들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사회복지사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득한 엄마와 아빠가 나올 것입니다.

아직 엄동설한이지만, 파릇파릇 새순이 나올 마음 밭을 기대하며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키우듯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파릇파릇 새싹을 그려보는 희망 가득한 날들 보내시기를~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Cover Story

미국의 Liquidation 과의 비교를 통해 보는 수입세액 정산제도

I. 들어가는 말

2018년 관세행정 상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2018.1.3 관세청에서도 수입세액 정산제도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며 2017년 기준 10개였던 정산제도 활용 업체를 30개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관세법인에서도 지난주부터 관련 홍보자료를 발송하며 고객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수입부문 AEO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의 검증을 통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1년 단위로 납부할 세액을 납세자 스스로 자율점검하고 세액을 추후 확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Liquidation(세액정산)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미국의 Liquidation 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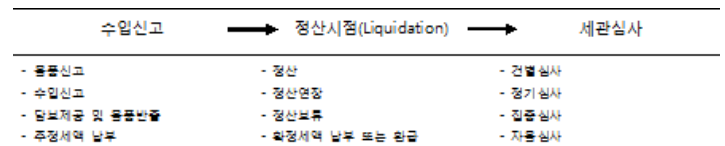
II. 미국의 납부세액정산제도(Liquidation)와의 비교

1. 미국 통관절차의 특이성

우리나라는 수입신고 시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및 관세의 신고납부를 통해 납부세액이 확정되는 반면, 미국은 수입신고 후 별도의 Liquidation 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Entry 신고) 후 Entry Summary 를 제출함으로써 잠정적으로 추정된 세액을 납부하고 1년 이내에 Liquidation 을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세액을 정정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 통관절차에서는 Liquidation 이라는 관세

확정을 위한 절차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납세자는 가산세 없이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림 1] 미국 통관절차 흐름에서의 정산¹

2. 우리나라 수입세액 정산제도와 비교

(1) 차이점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시 확정된 세액의 오류는 수정신고 또는 세관의 경정을 통해서만 재확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는 부족세액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그러한 과중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자율점검 및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정신청, 조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일부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세액 정산제도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세액확정의 효과를 세액 정산시점으로 유예시켜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Liquidation 제도는 모든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의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수입부문 AEO 기업 중 신청한 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Liquidation 의 경우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나 수입세액 정산제도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가산세 일부 경감 및 수정수입 세금계산서 발급허용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¹ 「수입세액 정산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참고

(2) 수입세액 정산제도와 Liquidation 절차 비교²

한국		미국	
1. 수입신고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 일 이내	1. 물품신고 (Entry)	입항 후 15 근무일 이내
2. 신고납부	-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 -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을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정정 가능	2. 담보제공 및 물품반출	* Entry 제출과 함께 물품반출 허가를 받으려면 수입자는 담보를 세관에 제공
3. 신고수리 및 관세납부, 물품반출	-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에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 신고수리 후 반출 -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 일 이내 관세 납부	3. Entry Summary 제출	* 매 Entry 신고서에 대응하여 Entry summary(Form 7501) 제출과 함께 추정된 관세 납부
4. 신고납부 세액의 확정, 보정신청, 수정신고	* 납세신고 후 관세납부를 한 경우 납부세액이 확정됨 * 납부세액이 확정된 때에는 보정신청, 수정신고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정불가	4. 세액납부 및 관세납부	* 추정된 관세 납부
5. 정산대상	수입부문 AEO 기업 중 지정업체(요건 충족)	5. 정산대상	수입상품에 대한 <u>모든 물품신고는 정산대상</u>
6. 세액확정: 2차확정시점	* 수입세액 정산업체 - <u>이자 및 가산세 부과</u> (기존 10%에서 8~9%수준으로 경감) - 추가관세에 대한 <u>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가능</u>	6. 세액확정: 정산 (Liquidation)	* 정산 시 추가관세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관세에 더하여 <u>이자</u> 가 부과됨

3. 맺음말

미국의 정산제도는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세액확정의 유예기간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신고 정확성에 대한 상시관리 및 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업체 또한 매년 세액오류에 대한 자율심사를 통해 보정 또는 조기에 수정신고를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 및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AEO 공인기업에 우선 실시된 후 조세저항 및 경영위험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³를 내어 일반 수입업체에도 확대적용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홍 모 윤

(myhong@customsservice.co.kr)

² 미국 납부세액정산제도의 분석 및 도입에 관한 연구, 김태인, 참고

³ 「수입세액 정산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참고

FTA News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 4 라운드 협상 발효 임박에 따른 각 기업의 APTA 활용 방안

지난해 1 월 13 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 4 라운드 협정 개정문 최종서명에 이어, 본 개정안의 발효가 2018 년 1/4 분기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 양허대상 품목 확대 및 원산지결정 기준 개정이라는 큰 변화로 APTA 활용률이 상당 폭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APTA 개정안 발효 전 각 기업에서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주요 개정 내용과 APTA 활용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요

APTA 란 무엇일까? FTA 라는 용어는 비교적 익숙해졌지만 APTA 라는 용어는 현재까지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기업이 많을 것이다. APTA 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총 6 개국(+1 개국: 몽골 가입절차 진행 중)이 포함된 무역협정으로, 해당 국가와의 교역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이라면 FTA 와 APTA 의 차이와 활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FTA 와 APTA 는 체약국 간의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증진을 그 목표로 하는 협정이라는 큰 맥락을 미루어 봤을 때에는 실무적으로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별개의 협정이니만큼 원산지결정기준, 양허품목, 기타절차 등 상당부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별 협정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II. APTA 제 4 라운드 협상 결과 개요

(1) 양허대상 품목 확대

3 라운드 대비, 양허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되며, 특히 한국·중국·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30%에 대하여 평균 33%의 관세가 감축된다.

(2) FTA 보완 효과

17 년 기준, 1,666 개 품목(우리측 의류, 비철금속 등 444 개, 중국측 철강, TV, 자동차 등 1,222 개)이 한-중 FTA 관세율 보다 낮아 FTA 보완 효과가 예상된다.

(3) 원산지 규칙 개정

기존 적용되어온 부가가치기준 이외에 HS 4 단위 156 개 품목(HS 6 단위 659 개)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금속제품, 플라스틱제품 등의 원산지증명이 용이해져 기업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III. 각 기업의 APTA 활용 방안

(1) 수출국이 체결한 협정 확인

제일 먼저, 각 기업은 거래대상국가가 우리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무역협정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한-중 FTA 및 APTA 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이고, 인도와 수출입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한-인도 CEPA 및 APTA 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두 가지 이상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와의 거래 시에는 두 협정 중 수출입자에게 유리한 협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용 가능한 협정 모두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2) 양허대상 및 양허세율 비교

거래대상국이 우리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협정을 파악한 이후에는 각 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각 협정에서 양허대상 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즉, 각 협정마다 양허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이 다르고, 품목마다 양허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일지라도 각 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관세율 혜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사전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양허세율 확인에 있어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사항 중 하나로, 각 양허세율 확인 및 비교 시에는 반드시 각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과 함께 비교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매년 잠정세율 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해당 잠정세율의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보다 낮은 품목도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수입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기본세율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3)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양허대상 및 양허세율 검토결과 각 협정 적용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각 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금번 APTA 개정안이 발효 될 경우, 부가가치기준 이외에 세번변경기준(CTH)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수출품목 원산지증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산으로 입증 받지 못하였던 기업이라면 눈여겨 볼만한 항목이라 할 수 있겠다.

(4) 기타 유의사항

무엇보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각 국가의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상기 사항과 무관하게 수입자가 특정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와의 거래 시에 어떤 협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요청사항을 최우선 순위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APTA 는 FTA 와 달리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세율 적용(사후적용)이 불가하므로 APTA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반드시 숙지가 필요한 사항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 소 라

srpark@customsservice.co.kr

Voices From The Fields

위기의 전안법 이대로 괜찮은가

신한관세법인, 전안법 개정안에 힘 실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던 KC 인증을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의류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 39 종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안법의 입법취지는 일견 타당해보이나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가령 위해도가 높아 관리 필요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대해 적용하는 제품시험 및 시험성적서 비치 그리고 KC 인증 취득을 의류 및 패션잡화에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법규준수의 당위성을 저해하며 이를 따라야 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업자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안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안법 개정안에서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 신설되어 '안전관리대상제품 관리체계'는 기존 3 단계에서 4 단계로 확대된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안전기준준수' 단계가 포함된 것인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중 일부 위해도가 낮은 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해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하나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기존의 제품시험 의무와 KC 인증 취득 의무에서 벗어났다. 다만 안전기준준수 확인에 대한 의무와 표시의무가 요구된다.

전안법 신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2018년 7월 1일 시행)

<p>법 28 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p>	<p>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p>
-----------------------------	---

<p>법제 29 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p>	<p>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제 28 조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②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제 1 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 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p>
<p>법 제 30 조(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p>	<p>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제 29 조 제 1 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p>
<p>법 제 31 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p>	<p>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제 28 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 29 조제 1 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 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p>

약법 전략 위기에 처했던 전안법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일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세업체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안전기준준수대상에 어떤 품목이 포함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아울러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최종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구조도 부담으로 남아있다. 또한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전에 관련 인증을 표시해야 해서 비용 상승, 통관 지체 등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추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신한관세법인은 상품 및 통관전문가로서 앞선 법률 개정에서도 개정 의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개정안 발효에 힘을 실은바 있다. 제출한 개정 의견안은 그 중 일부가 이번 법률 개정에서 반영되었다. 신한은 추가로 전안법에 잔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60년 경력의 통찰력으로 업계를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수출입 물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정비를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전 희 영
(hyjeon@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일부 개정 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I. 개정이유

규제완화 등 성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II. 주요 개정내용

□ 서류제출 대상 정비(제 13 조)

-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재반입 시 반품 증빙자료 제출 생략
-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

○ 수입 유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류제출 규정

○ 첨부서류 생략 대상(P/L·전자통관심사)건에 대해 신고수리 후 첨부서류를 익월 10일까지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신설(제26조)

○ 국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관세법 제237조 반영)

*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명단공개 체납자 수입물품은 압류·매각을 세관장에게 위탁

□ 반복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제 63조)

○ 전자통관심사 대상에 반복거래 등 특정거래 물품을 추가하고, 수입업체와 관련된 신고인, 물류업체가 모두 AEO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별표13] 삭제

□ 소액물품 관세면제 기준 개정 반영(제71조)

○ 과세가격 15만원에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개정(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개정 반영)

□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등 개선(별지 1-2호)

○ 납세의무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기재이나, 사업자번호가 없는 해외소재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거래처 부호를 등록 허용

○ 전자상거래의 경우 해외거래처란에 판매업체와 대행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도록 변경(현행 : 사이트 주소와 회사명을 기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I. 개정사유

□ 민원인 FTA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채택사항 반영

□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 편의 제공 등

II. 주요 개정내용

□ 민원인 FTA 활용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채택과제 반영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 전자제출 허용(\$18)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경정청구서는 전자제출이 가능하나,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서면 제출 등으로 기업의 불편

⇒ 전자제출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행정 비용 등을 경감

- 수출기업의 FTA활용 촉진을 위한 원산지증명 간소화 추진
 - 공산품도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제도 '원산지 간이발급제도' 도입(§ 26, 27조)
 - 간이발급대상 고시: 161개 물품(별표 2-2)
 -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국내제조 확인서' 1장으로 원산지소명서 작성 허용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진아

[\(jakim@customsservice.co.kr\)](mailto:jakim@customsservice.co.kr)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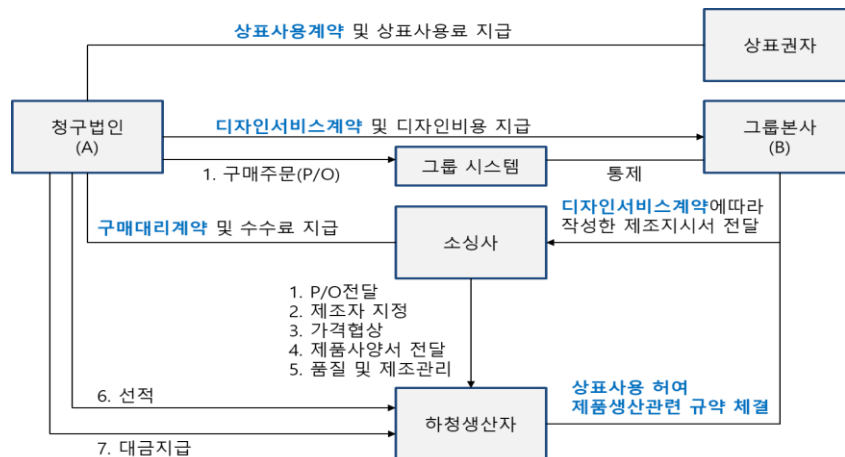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법인과 미국 본사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 관 이77 (2017.10.23)]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간 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가격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물품 판매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은 외형적인 매매계약의 형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물품의 판매자를 결정할 때에는 거래의 실질을 봐야 하며, 이를 실질과세원칙이라 부른다. 실질적 판매를 어떤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할지를 고민해 볼만한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I. 사실관계

청구법인A는 B가 지배하는 그룹에서 자본금을 100% 투자하여 설립한 국내 자회사로, 해외 하청생산자가 생산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수입하면서 하청생산자가 청구한 가격에 근거하여 수입신고가격으로 신고하였고, 관세조사 실시 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B 임에도 B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하청생산자 D가 청구한 제조비용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B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가격이라고 보아 제4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고지하였고, A는 처분청이 거래의 모든 형식적 요건을 무시하고 B를 실질 판매자라는 개념을 들어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는 전제로 행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조세심판원의 결정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개발에서 판매까지의 일련의 과정 동안 그룹본사 B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전반적인 통제·관리를 수행하므로 B를 제품의 판매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있어 다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 B는 하청생산자와 계약을 통해 하청생산자가 B의 허락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쟁점물품을 제조·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점,

- B가 소심사와 하청생산자간 가격협상을 최종 승인하는 점,
- B가 소심사가 발굴한 하청생산자를 최종 승인하고 이후 제품생산관련 규약을 체결하여 하청생산자를 통제하는 점,
- B가 그룹내 판매법인의 총 구매물량을 취합 확정하고 이를 소심사를 통해 하청생산자에게 전달되는 점,
- B가 쟁점물품의 디자인을 결정하고 제조지시서를 작성하여 하청생산자에게 전달하는 점,
- B가 쟁점물품의 개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하는 점,
- 청구법인과 하청생산자간에 구매·제조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점,
- B의 지시에 따라 소심사가 하청생산업자에 대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점,
- B는 제품의 개발, 소싱,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것과 달리 하청생산업자는 단순한 제조만을 담당하고 그에 따른 이익만 보전 받는 점

Ⅲ. 시사점

쟁점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하청생산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P/O 를 발행하였고, 하청생산자가 선적하고 발행한 인보이스에 따른 금액을 하청생산자에게 지급하였다. 서류상을 보았을 때 하청생산자는 판매자이며 해당 금액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데에는 의심의 여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계약(P/O)의 당사자, 소유권의 이전여부, 대금지급 여부에 따라 판매자가 하청생산자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결정은 단순히 서류상 기재된 판매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의 실질을 확인하여,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당사자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며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인 판매자로 보아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김 혜 란

(hrkim@customsservice.co.kr)

ABOUT WRITERS

COVER STORY -

미국의 Liquidation 과의
 비교를 통해 보는 수입세액...



홍 모 윤 관세사
myhong@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법률 컨설팅팀
- 기업심사 컨설팅
- 환급 업무지원, 품목분류

FTA News -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
 [APTA] 제 4 라운드 협상



박 소 라 관세사
srpark@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관세 마케팅팀
- 前 인천공항 지사
- 前 창원 지사 지사장
- 전자부품/화학약품 통관
- 환급 컨설팅 전문

Voices From The Fields -

위기의 전안법 이대로
 관철은가 신한관세법인...



전 희 영 관세사
hyeo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전문 통관팀
- 前 글로벌 자문 부문
- FTA 컨설팅 전문
-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 불복청구 대리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소식



김 진 아 관세사
ja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무역 컨설팅팀
- 수출입 통관 및 HS 품목분류
- 요건 검토
- 원산지관리사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

미국 본사를 실제 판매자로
 보고 청구 법인과 미국 본사...



김 혜 란 관세사
hrk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지사
- 前 기업 관세 자문 부문
- 기업심사, 외환, 환급컨설팅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원산지관리사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Shinhan